

국내 유전자원 이용에 따른 상호합의조건 규정 도입을 위한 소고

오 선 영*

차 례

- I. 서론
- II. 유전자원법 개관
- III. 이익 공유 관련 해외 사례 비교연구
- IV. MAT 체결 및 절차 규정 도입을 위한 고려사항
- V. 결론

[국문초록]

나고야의정서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도 유전자원법 시행을 통해 동 의정서의 성공적인 국내 이행을 돕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행법률의 명확한 ABS 규정 및 절차 도입이 필수조건이라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친(親) 이용자적 입장에서 엄격한 접근 및 이익 공유 절차보다는 간단한 접근 운영과 함께 이익 공유를 합의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절차준수 의무역시 그리 까다로운 편은 아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영역 내 유전자원등의 이용에 대해서는 제 공자적 입장에서 이와 관련된 조치를 명확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우리의 경우, 외국인에 한하여 접근신고 의무를 명문화하고 있지만, 이익 공유와 관련하여서는 이에 대한 합의를 하도록 의무화를 명시할 뿐, 이를 위한 MAT 체결의 의무사항인지, 관련 절차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나고야의정서 제6조 3(g)항에서 PIC관련 절차를 도입한 당사국은 명확한 MAT관련 규정을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접근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어, 명확한 MAT 관련 규정 및 절차를 도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조항에 대한 개정을 통해 나고야의정서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유전자원법상 국내 유전자원 이용 시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 숭실대학교 글로벌통상학과 부교수, 법학박사.

MAT 관련 규정 도입에 따른 여러 고려사항들을 살펴보아 우리 정부의 이익 공유 대응 체계상의 관련 문제와 향후 과제를 연구하였다.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MAT 체결 도입 방식 및 체결 시기에 대한 명문화이다. 현재의 유전자원법에 따라 MAT 체결은 접근 신고 후에도 가능하지만, MAT 체결을 신속히 장려하기 위하여, 접근 신고 후 일정 시기 내에 체결하도록 하는 규정 도입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관련 규정에는 MAT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들을 열거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는 문구를 삽입하여야 한다. 셋째, 내외국인간 구별 시 국제 통상법적인 분쟁을 야기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제한 범위를 두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MAT 관련 전담 상담창구 및 우리나라 국민이 제공자로서 효율적인 MAT 협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인식제고 및 역량강화 등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대한 명문화 규정이 필요하다.

I. 서론

유전자원 및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지식(이하, 유전자원등)을 이용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한 국제 지침인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이하, 나고야의정서)』¹⁾가 2010년에 채택되어 2014년에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타 국가의 유전자원등을 이용하려는 자는 반드시 유전자원 제공국(자)에게 사전통고승인(Prior Informed Consent, 이하 PIC)을 받은 후 유전자원등에 접근이 가능하며, 이를 이용한 후 발생한 이익은 제공자와 이용자가 사전에 체결한 상호합의조건(Mutually Agreed Terms, 이하 MAT)에 따라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되어야 한다. 동 의정서에는 2018년 7월 현재 105개의 당사국이 있으며, 오는 11월에 제3차 당사국회의가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릴 예정이다.²⁾

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등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실현하기 위하여³⁾ 당사국에게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과 이익 공유(Access

1) The 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Oct. 29, 2010

2) <http://www.cbd.int/abs/nagoya-protocol/signatories/default.shtml>(최종 접속일 2018년 7월 14일)

3) 나고야의정서 제1조(목적)

and Benefit Sharing, 이하 ABS) 관련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⁴⁾ 현재 많은 당사국들은 동 의정서를 이행하기 위한 관련 법·절차를 마련하거나 제정 중에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원법)을 제정하여 이를 2017년 8월 17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⁵⁾ 우리나라의 접근 규정은 외국인에 한하여 접근신고 의무를 명문화하고 있지만, 이익 공유와 관련하여서는 MAT 체결이 의무인지 장려사항인지, 어느 시점 어떠한 절차로 요구되는지 등 관련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상황이다. 나고야의정서 제6조 3(g)항에서 PIC관련 절차를 도입한 당사국은 명확한 MAT관련 규정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유전자원법에는 이익을 공유하도록 합의하여야함을 규정할뿐 MAT 관련 절차 및 규정은 없다. 더욱이 우리나라가 제공국 입장에서 국내 유전자원을 보호하고 이익 공유를 통한 이익 창출 및 생물다양성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의 실현을 위해서는 PIC보다는 MAT가 더 중요할 수 있다. 이에 적절한 MAT 관련 규정이 명확하게 도입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여러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익 공유 의무화에 따른 MAT 체결을 내외국인에게 차별 없이 모두에게 요구할 것인지 고민해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내국인에게도 국내 유전자원 이용 시 이익 공유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국내 이용자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를 우려하여, 외국인에게만 MAT 체결을 의무화하는 경우에는 국제통상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기에 이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시급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리 정부의 이익 공유 대응 체계상의 관련 문제와 향후 과제를 연구하고자 우리나라 유전자원법상 국내 유전자원 이용 시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MAT 체결 의무화 여부에 따른 여러 고려사항들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먼저, 우리나라 유전자원법의 ABS관련 조치를 중심으로 이를 개괄적으로 소개하였다. 다음으로 유전자원법 이익 공유 관련 규정을 통해 이익 공유 의무화에 따르

4) 나고야의정서 제5조(공정하고 공평한 이익 공유), 6조(유전자원 접근) 및 7조(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 접근)

5)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839호, 공포일 2017.07.26, 시행일 2017.08.17.,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246호, 공포일 2017.08.16, 시행일 2017.08. 17,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720호, 공포일 2017.11.27, 시행일 2017.08. 18

는 제반 고려 사항들을 검토하고자 타 당사국들의 관련 규정들을 비교연구 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MAT 관련 규정 도입을 위한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II. 유전자원법 개관

본 법은 제5장 제28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접근 및 이익 공유, 절차 준수 등의 실제적인 의무는 오는 8월 18일부터 발생한다. 제1장에서는 본 법의 목적, 적용 범위 및 타법과의 관계 등이 서술되어 있으며, 제2장에서는 국내 유전자원 등에 대한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와 관련된 내용으로 국가연락기관 및 국가책임기관 소개, 접근 신고 및 이익 공유 등을 서술하고 있다. 제3장은 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대한 내용으로, 내국인이 외국의 유전자원등을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내용들이 담겨 있다. 즉 의무 준수(compliance)의 내용이 주를 이룬다. 제4장에서는 보칙으로 정보의 허브 역할을 하는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와 협의회 구성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벌칙과 과태료 등이 서술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가 제공국 입장에서의 국내 유전자원 등에 대한 관리 규정들을 살펴보기에 제2장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기술하였다.

1. 접근 관련 조치

나고야의정서 제6조(접근)에 따라 유전자원의 원산지국이면서 제공국은 해당 자원에 대한 국가 주권 행사로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에게 PIC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당사국은 접근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유전자원법 제9조 1항에 따라 이용을 목적으로 국내 유전자원등에 접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책임기관에 ‘접근 신고’를 하여야 한다.⁶⁾ 그러나 동법에서는 내외국인을 구별하여, 내국인은 접근신고의 의무가 없

⁶⁾ 접근 목적 및 용도 변경, 신고한 유전자원의 수량 또는 농도를 100분의 10이상의 범위에서 증가하는 경우, 그리고 MAT를 체결한 이후, 이에 대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책임기관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유전자원법 시행령 제4조 5항)

지만, ‘외국인, 재외국민, 외국기관, 국제기구와 이에 준하는 자’는 국가책임기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⁷⁾ 내국인인 경우에는 유전자원 제공국이 대한민국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접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접근 신고가 필수 의무사항은 아니다.⁸⁾ 접근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써, 접근 신고를 받은 국가책임기관은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⁹⁾ 치료제 개발이나, 식량 확보 등을 위하여 신속한 접근이 필요한 경우나, 순수 연구 등 비상업적 목적으로 국내 유전자원에 접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가 간소화되거나 신고 예외가 될 수 있다.¹⁰⁾ 접근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¹¹⁾ 또한 접근 및 이용이 금지된 유전자원에 접근한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해당 유전자원등은 몰수된다.¹²⁾

우리나라 접근 조치의 특징은 첫째로, 접근 신고 대상자에 내외국인을 구별한다는 점이다. 이는 자칫 내국민대우원칙을 포함한 비차별주의 통상원칙에 어긋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나, 접근 신고의 수리 여부 정도가 까다로운 편이 아니며, 접근 신고 시 작성해야 하는 내용도 크게 기밀스러운 부분들이 아니기에,¹³⁾ 이에 따른 통상법적 분쟁은 그리 실효가 크지 않다고 생각된다. 둘째, 내국인은 접근 신고 의무로부터 자유로우나 다음의 경우에는 불명확하다. 즉 내국인이 외국인과 공동 연구를 통해 유전자원에 접근하는 경우, 신고의 대상이 되는지 의문이다. 이와 관련된 명확한 규정 도입과 함께 이에 대한 접근 신고 관련 서류의 기재 항목의 추가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¹⁴⁾ 셋째, MAT 체결이 접근 신고 수리의 전

7) 이에 준하는 자는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그리고 외국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가진 법인으로서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의미한다 (유전자원법 시행규칙 제2조)

8) 유전자원법 제9조 4항

9) 유전자원법 시행령 제4조 3항

10) 유전자원법 제10조

11) 유전자원법 제28조

12) 유전자원법 제26조 및 27조

13) 접근 신고 시 작성 내용은, 신고자 정보, 유전자원의 명칭 및 수량, 접근 방법, 목적 및 용도, 이용국가, 이용방법 및 이용기간, 그리고 MAT 체결여부와 간단한 내용 기재이다 (유전자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14) 이상준, “나고야의정서 국내이행을 위한 국내 유전자원 접근 신고에 대한 소고”, 『환경법연구』 제38권 제3호, 2016, 314면

제조조건은 되지 아니 한다. 즉 MAT 체결 없이도 우리나라 유전자원에는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접근 신고증명서가 발급된 후 MAT를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해당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¹⁵⁾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우 접근 신고를 신청하기 이전이나, 접근 신고를 받은 후에도 MAT를 반드시 체결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2. 이익 공유 관련 조치

나고야의정서 제5조(공정하고 공평한 이익 공유)에 따라 유전자원 이용, 후속하는 응용 및 상용화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은 그러한 자원의 원산지 국가로서 해당 자원을 제공하는 당사국과 공정하고 공평한 방식으로 공유되어야 하며 이러한 공유는 MAT에 따라야 한다.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입법적, 행정적, 또는 정책적 조치 중 적절한 조치를 채택하여야 하며,¹⁶⁾ MAT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¹⁷⁾

우리나라의 경우, ‘유전자원등의 제공자 및 이용자는 국내 유전자원등의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합의하여야’ 함을 명문화하고 있다.¹⁸⁾ 원래 유전자원법 초안에는 ‘유전자원등의 제공자와 이용자는 국내 유전자원등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하여 합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었다.¹⁹⁾ 이와 더불어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이익 공유에 대한 합의가 공정하고 공평하게 체결되도록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²⁰⁾ 이는 삭제되었다.

유전자원법 초안에서의 이익 공유 노력의 의무보다는 본 법에서 합의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이익 공유 실현에 더 부합한다고 할 수 있으나, 유전자원법 어디에도

15) 유전자원법 시행령 제4조 4항

16) 나고야의정서 제5조 3항

17) 나고야의정서 제6조 3(g)항

18) 유전자원법 제11조

19)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정(안), 환경부공고 제2016-439호, 제11조 1항

20)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 11조 2항

MAT 작성 의무화를 명시하거나 관련 규정이 있지 아니하다. MAT를 의무화하는 것은 PIC제도 마련과 마찬가지로 당사국이 반드시 입법해야 할 사항은 아니고 당사국의 결정사항이다. 하지만 전술하였듯이 나고야의정서 제6조 3항(g)에 따르면 PIC을 요구하고 있는 당사국은 ‘MAT 요구 및 체결에 대한 명확한 규칙 및 절차를 설치하여야 하고 MAT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입법적, 행정적, 또는 정책적 조치 중 적절한 조치를 채택하여야 하도록 의무화(shall)’ 되어 있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²¹⁾ 즉 PIC을 요구하지 아니하면 MAT체결 여부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지만, PIC을 요구하고 있다면 반드시 MAT 관련 규정을 두어야 한다.

이에 따라 접근 신고를 요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MAT 요구 및 체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도입해야 하는 것이 나고야의정서에 정확히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MAT 요구는커녕 관련 절차에 대해서는 언급 규정도 없다. 다만 접근 신고 후 MAT를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확인을 신청할 수 있는 정도만 규율하고 있을 뿐이다.²²⁾ 물론 유전자원법 제11조 내 ‘합의하여야 한다’는 문구 자체에 MAT 체결이 요구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고야의정서 제5조 1항에서 이익 공유는 MAT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유전자원법 조문 자체에 MAT 체결이 문구화되지 아니하여도 이익 공유를 위한 합의를 한다는 것 자체에는 서면으로 이익 공유를 위한 MAT를 체결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해석은 가능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친(親) 이용자적 입장으로 유전자원등에 대한 국가 주권 행사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즉 ABS에 관련된 적절한 조치를 도입함에 있어 이용자들에게 크게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자 했던 것이 기본 입장이었다. 그러나 PIC요구와 MAT는 해당 국가가 이용국이 아닌 제공국 입장에

21) 나고야의정서 제6조 3항(g): Each Party requiring prior informed consent shall take the necessary legislative, administrative or policy measures, as appropriate, to establish clear rules and procedures for requiring and establishing mutually agreed terms. Such terms shall be set out in writing...

22) 나고야의정서 제6조 3항(g): Each Party requiring prior informed consent shall take the necessary legislative, administrative or policy measures, as appropriate, to establish clear rules and procedures for requiring and establishing mutually agreed terms. Such terms shall be set out in writing...

서 요구하는 것이 크다. 특히 ABS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유럽이나 일본과는 달리 접근 신고를 요구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써는 유전자원 이용으로 인한 이익 공유를 위한 MAT 체결의무를 도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본다.²³⁾ 특히 국내 유전자원이 어디에서 누군가에 의해 어떻게 이용되어지는지 추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고야의정서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공유를 요구하고 이를 생물다양성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쓰여지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유전자원법 제11조 내용 자체로 MAT 체결은 의무로 보고 있다고 해석하더라도 명확한 관련 규정 도입은 필요하다. 그렇다면 MAT 요구나 관련 절차 도입을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가? 이를 제언하기에 앞서 이익 공유와 관련된 해외의 사례들을 먼저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여러 고려 요소들을 후술하였다.

Ⅲ. 이익 공유 관련 해외 사례 비교연구

나고야의정서는 ABS 조치의 내용이나 형식은 각 당사국이 결정할 수 있다. 우리나라 이익 공유 관련 조치의 도입 및 논의를 위해서는 먼저 타 당사국들의 동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주요 당사국들의 이익 공유 관련 조치들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유럽연합 및 개별 회원국

EU는 나고야의정서가 공식 발효되는 2014년에 이미 당사국으로써 동 의정서의 성공적인 국내 이행을 위해 발빠르게 관련 규정들을 도입하였다. 2011년을 시작으로 관련 규정에 대한 논의가 EU내 심도있게 다루어졌으며, 2014년 6월 9일, 「나고야의정서의 이용자 준수조치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칙(이하, EU규칙 511/2014)」²⁴⁾을 발효하였다. 이와 함께 2015년 11월 19일, 동 규칙을 실시하기 위

23) 유전자원법 시행령 제4조 4항

24) 박종원, “나고야의정서 국내이행을 위한 한국의 입법추진동향과 과제”, 「환경법연구」 제37권

한 세칙인 「유럽위원회 실시세칙(이하, EU 실시세칙 2015/1866)」을 마련하였고 이를 시행하고 있다. 동 규칙과 실시세칙은 이용국 조치로서의 규정을 자세히 다루고 있는데, 특히 이용자의 적절주의 의무(due diligence)와 의무준수(compliance)에 대한 구체적인 의무가 중심이 되고 있다.²⁵⁾ 그리고 EU 규칙 511/2014에는 나고야의정서에도 없는 ‘접근’ 그리고 ‘상호합의조건’ 용어에 대한 정의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점이 특이하다. EU 규칙 511/2014에 따라 ‘접근’이란 나고야의정서 당사국내의 유전자원등을 취득하는 것이며,²⁶⁾ ‘상호합의조건’이란 유전자원등의 제공자와 이용자 간 유전자원등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을 포함하여 유전자원등의 이용, 후속 응용 및 상업화와 관련된 상세한 조건을 기재할 수 있는 계약상의 약정을 의미한다.²⁷⁾ 그러나 동 규칙 내에는 ABS 의무를 따로 언급하고 있지 아니하고, 접근이나 이익 공유 또는 MAT 관련 내용들은 EU의 각 회원국이 개별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개별국가의 관련 규정을 살펴보아야 한다.

독일은 2016년 7월 20일 당사국이 되었으며, EU 회원국들 중 가장 적극적으로 나고야의정서 국내 이행을 위한 절차를 마련한 국가 중 하나이다. 독일은 나고야의정서와 EU 규칙 511/2014를 이행하기 위하여 연방법을 마련하였다.²⁸⁾ 독일은 국내 유전자원 등에 대한 ABS 관련 규정을 따로 도입하지 아니하여, PIC 또는 MAT은

제1호, 2015, 101면

- 25) REGULATION (EU) No 511/201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6 April 2014 on compliance measures for users from the 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in the Union,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HTML/?uri=CELEX:32014R0511&from=EN>
- 26) EU 관련 조치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 논문을 참조. 허인·전정화, ‘나고야의정서 상의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대한 EU의 이행 현황,’ 『환경법연구』, 제39권 1호, 2017, 333면
- 27) EU 규칙 511/2014 제3조 3항. ‘Access’ means the acquisition of genetic resources or of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in a Party to the Nagoya Protocol between a provider of genetic resources, or of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and a user, that set out specific conditions for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 utilisation of genetic resources or of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and that may also include further conditions and terms for such utilisation as well as subsequent applications and commercialisation.
- 28) Bundestags-Drucksache 17/14245, 27.06.2013, at 2

의무사항이 아니다. 개별 사유지 내의 유전자원등에 대해서는 사유지 주인이 독일헌법 제14조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매매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는 유전자원등은 독일 민법 등에 적용을 받는다. 공유지나 보호지역에서의 유전자원등은 독일 「연방자연보전법(Federal Nature Conservation Act)」에 의해 규율 받음을 명시할 뿐²⁹⁾ PIC이나 MAT 관련 규정을 따로 도입하지 아니하였다.³⁰⁾

영국은 2016년 5월 22일 당사국이 되었으며, 독일과 마찬가지로 유럽 국가 중 가장 선도적인 이행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국가이다.³¹⁾ 영국은 나고야의정서 및 EU 규칙 511/2014를 이행하기 위하여 「나고야의정서(의무준수)규칙(The Nagoya Protocol (Compliance) 2015 No. 821)」을 제정하였다.³²⁾ 영국 규칙도 독일이나 타 EU회원국과 마찬가지로 PIC이나 MAT 의무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이외 네덜란드,³³⁾ 프랑스³⁴⁾ 등 EU 회원국들은 발 빠르게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위한 법 규정을 도입하였지만, 이는 자국의 이용자들이 나고야의정서 의무준수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할 사항들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을 뿐, EU 내 유전자원 접근 및 이를 이용하여 이익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공유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이 없다. 나고야의정서에 따라 모든 당사국들은 타 당사국의 유전자원등에 접근 및 이용을 하려고 하는 경우 이용자들이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한 조치는 반드시 마련해야지만, 접근 관련 규정 도입에 있어서는 당사국의 재량에 맡겨졌기 때문에 ABS 관련 조치를 요구하지 않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³⁵⁾ 따라서 EU 내 유전자원등에는 자유롭게 접근이 가능하며, 반드시 이익 공유를 실현하도록 강요되지는 아니하여 EU내 유전자원등의 이용에는 큰 부담이 없다. 그러나 EU는 이용자들의 적절주의 의무를 강화하여 타 당사국의 ABS 관련 조치를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나고야의정서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것 같다.

²⁹⁾ Brendan Coolsaet, et. al., "Implementing the Nagoya Protocol: Comparing Access and Benefit Sharing Regime in Europe," Brill Nijhoff (2015), at 121

³⁰⁾ *Id.*

³¹⁾ <https://absch.cbd.int/countries/DE> (최종 접속일: 2018년 7월 17일)

³²⁾ 허인·전정화, 전개논문, 344면.

³³⁾ https://absch.cbd.int/api/v2013/documents/2B0C5448-2A87-A536-9084-EB184130B702/attachments/stcrt-2016-20958_regeling%20-%20EN.pdf

³⁴⁾ <https://absch.cbd.int/countries/FR>

³⁵⁾ <http://www.legislation.gov.uk/uksi/2015/821/contents/made>

2. 일본

일본은 주요 이용국 중 하나으로써, 지난 2017년 8월 20일 나고야의정서의 당사국이 되었다. 일본은 나고야의정서를 이행하기 위하여, 입법적 조치가 아닌, 가이드라인 형식으로 「유전자원의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지침(Guidelines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이하, ABS 지침)」을 2017년 5월 18일 채택하였다.³⁶⁾ 동 지침은 법적 효력은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재무성, 문부과학성, 후생농림성,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및 환경성이 오랜 기간 동안 산업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된 것이다.

일본은 자국 유전자원에 대한 원활한 이용과 연구개발을 위해 동 지침에 접근과 관련된 조치를 마련하지 아니하였다.³⁷⁾ 이익 공유와 관련하여서도, 동 지침은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위한 계약(contract)을 체결하도록 장려(encourage)하고 있을 뿐 의무사항은 아니며,³⁸⁾ 이에 따라 공유된 이익 역시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쓰여지도록 장려될 뿐이다.³⁹⁾ MAT 체결은 가능한 산업별, 부문별에 맞게 작성되도록 하며, 이용자들은 자발적 행동강령(voluntary code of conduct), 지침(guidelines), 모범 관행(best practices) 및 기준(standards) 개발에도 노력을 해야 한다.⁴⁰⁾

이와 같이 일본의 지침은 EU의 것과 매우 비슷하다. 일본은 자국 내 유전자원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ABS 조치를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나, 해외의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자들은 접근 승인 후 6개월 이내에 환경성에 보고(report)하도록 의무화하여 의무준수를 강화하고 있다.

³⁶⁾ Brendan Coolsaet, et. al., *supra* note 30, at 121.

³⁷⁾ https://absch.cbd.int/api/v2013/documents/E9EF6761-B9F4-4C7E-5580-C08594B789E4/attachments/ABS%20Guidelines_EN.pdf

³⁸⁾ 일본 ABS지침 제3장 제1

³⁹⁾ *Id.*, 제3장 제2

⁴⁰⁾ *Id.*, 제3장 제3-4

3. 인도

인도는 대표적인 유전자원 제공국으로써, 2014년 10월 12일 당사국이 되었다. 인도는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하기 이전부터 국내 유전자원등의 ABS 구축을 위해 관련법들을 정비하였다. 인도는 2002년 「생물다양성법(Biological Diversity Act)」⁴¹⁾을 시작으로 2004년 「생물다양성규칙(Biological Diversity Rules)」,⁴²⁾ 그리고 2014년 「유전자원등의 접근 및 이익 공유 지침(Guidelines on Access to Biological Resources and Associated Knowledge and Benefits Sharing Regulations, 이하 ABS지침)」⁴³⁾을 마련하였다.

인도는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기 이전부터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에 대한 허가 규정을 갖추고 있다. 즉 이용자는 상업적/비상업적 목적을 구분하여 생물다양성규칙에 첨부된 서식(Form I)을 작성하여 이를 국가생물다양성기관(National Biodiversity Authority, 이하 NBA)에 접근허가 신청을 완료하여야 한다.⁴⁴⁾ 인도는 MAT 체결에 대한 규칙과 절차까지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내용은 주로 MAT 체결자는 NBA와 접근허가 신청자로 동 기관이 허가 신청 내용에 만족하는 경우, MAT를 체결하여 이를 허가 교부로 간주한다는 것들이다.⁴⁵⁾

이익 공유와 관련하여 인도는 금전적/비금전적 이익 공유를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ABS지침에서 이익 공유 비율을 매우 세밀하게 규정하고 있다. 즉 인도는 구배

41) https://absch.cbd.int/api/v2013/documents/879DF138-1407-CAE9-86DE-E4B1E3ABF08E/attachments/Biological_Diversity_Act_2002.pdf

42) <https://absch.cbd.int/api/v2013/documents/F1C0DE87-058E-BADA-4426-907F0C1F5909/attachments/Biological%20Diversity%20Rules%2C%202004.pdf>

43) <https://s3.amazonaws.com/km.documents.attachments/0c15/a5f2/7a9e32c38d62dc57dc36cc0d?AWSAccessKeyId=AKIAI7FAKFTLBEQGAW3Q&Expires=1532010960&response-content-disposition=inline%3B%20filename%3D%22Biological%20Diversity%20Rules%2C%202004.pdf%22&response-content-type=application%2Fpdf&Signature=NeQsWjBpWVvrr%2FXJt2ZAtOUCq7Y%3D>

44) https://s3.amazonaws.com/km.documents.attachments/5bc9/9f4d/0e6b55771696082ea1548b69?AWSAccessKeyId=AKIAI7FAKFTLBEQGAW3Q&Expires=1532009986&response-content-disposition=inline%3B%20filename%3D%22Guidelines%20on%20Access%20and%20Benefit%20Sharing_%20India%202014.pdf%22&response-content-type=application%2Fpdf&Signature=DK7GxJEKBJHqJLAmRKIMWoDPfG%3D

45) 인도 ABS지침 제2조 및 인도 생물다양성규칙 제14조

자(생물자원 구매가의 1.0-3.0%), 제조업자(구매가의 3.0-5.0%), 중개상으로부터 구매한 거래자(구매가의 1.0-3.0%), 중개상으로부터 구매한 제조업자(구매가의 3.0-5.0%) 등에 따라 별도의 이익 공유 비율을 규정하고 있다.⁴⁶⁾ 접근허가 신청자는 옵션으로 연간 총 출고액(공장도가격 기준에서 세금을 제외)의 0.1-0.5%로 이익 공유가 가능하기도 하다.⁴⁷⁾ 그리고 샌달우드와 같은 높은 경제적 가치를 가진 생물 자원의 경우에는 유전자원 접근 전 NBA 또는 생물다양성위원회(SBB) 결정에 따른 경매가 또는 구입가의 최저 5%의 선급금 부과가 가능하다.⁴⁸⁾ 참고로 내국인 또는 내국기업은 유전자원 연구결과의 이전이나 지식재산권 취득에 있어 신청 서류나 절차가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과는 구별되나, 이익 공유 비율 등에서 차등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와같이 인도는 이익 공유 비율을 입법화한 소수의 국가로써, ABS협상에서 법적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이익공유비율의 근거 및 도출과정 등이 불분명하여, 이것이 과연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의문점은 있다.⁴⁹⁾ 그러나 MAT 체결 규칙 및 과정을 규율하고 있는 점, 내외국인 구별 없이 이익 공유를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은 우리나라 이익 공유 관련 법제도 완비에 참고가 될 것이다.

4. 소결

주요 이용국들은 PIC과 MAT 의무화 없이 자국의 국내 유전자원의 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지만 의무준수 규정들을 통해 타 당사국의 ABS 관련 절차의 이행을 돕고 이를 통해 나고야의정서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주요 제공국들은 자국 내 유전자원의 접근 규정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얻어진 이익은 반드시 공유토록 하는 MAT 관련 절차 및 규정들을 도입하고 있다. 이에 더 나아가, 인도나 브라질⁵⁰⁾ 등은 이익 공유 비율까지 입법화하여, 자국의 유전자원

46) 인도 ABS지침 제1조(2)항, 제2조(2)항, 제6조(2)항, 제8조(2)항, 제11조(2)항 및 제16조(10)항

47) 인도 ABS지침 제3조(1)항

48) 인도 ABS지침 제4조

49) 인도 ABS지침 제3조(3)항

50) 브라질은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마존 열대 우림을 포함하여, 다양한 생물

에 대한 주권 행사에 매우 적극적임을 알 수 있다.

전술하였듯이, ABS 절차 도입은 당사국의 결정 사항이지만 나고야의정서는 PIC 관련 절차를 도입한 당사국에게는 명확한 MAT 관련 절차 들을 규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따라서 유럽이나 일본과 같이 접근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지 아니한 경우 이익 공유 의무화 관련 규정 도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접근 관련 규정이 따로 마련된 경우에는, 이익 공유 관련 MAT 절차를 명확히 할 의무 및 그 필요가 있다. 이는 이익 공유 비율 제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MAT 체결을 접근 신고 전후 어느 시점에서 요구할 것인지 등 체결시기 문제, 국내 유전자원 이용에 따른 이익 공유를 내외국인 구별없이 요구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 MAT 관할 및 질의처 등 관련 부서 문제 등 우리나라는 해당 내용 및 절차를 신속히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관련 규정 도입을 위한 고려사항은 다음장에서 바로 후술하기로 한다.

IV. MAT 체결 및 절차 규정 도입을 위한 고려사항

나고야의정서 제5조 1항에 따라 유전자원등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은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되어야 하며, 이러한 공유는 MAT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접근 관련 조치를 의무화하기로 하였다면 각 당사국은 MAT 요구 및 체결을 위한 명확한 규정과 절차를 위한 입법적, 행정적, 또는 정책적 조치 중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⁵¹⁾ 접근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익 공유를 합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혹자는 나고야의정서가 이익 공유는 서면 형식의 MAT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유전자원법 제11조의 조문 자체에 MAT라는 용어가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더라도 MAT 체결은 의무라고 해석하는 것

종의 보고로 여겨지는 만큼 자국의 유전자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입법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브라질 생물다양성법 w2021에서는 금전적 이익공유 비율을 연간 순매출액의 1%로 할당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 <https://absch.cbd.int/api/v2013/documents/A1D6B77C-E396-3333-63EE-3C7DC9716F1C/attachments/Brazil%20Law%202013.123.docx>

51) 김윤정, '나고야의정서 이행에 있어 금전적 이익공유에 대한 고찰- 브라질, 인도의 입법적 조치를 중심으로,' 『국제경제법연구』, 제16권 3호, 2016, 56면

이 바람직하여, MAT 체결 조항이 부재하여도 무방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유전자원법에 MAT 관련 절차 및 규칙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담겨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아래 사항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1. MAT 체결 도입 방식 및 체결 시기

여기에는 접근 신고와는 별개로 MAT의 체결을 의무화하는 방안, 또는 접근신고 수리를 위한 요건으로 MAT을 사전에 체결하도록 하여 이를 접근 신고 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현재 유전자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접근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식⁵²⁾에는 MAT 체결 여부를 체크하고 미체결 시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MAT 체결은 접근 신고 수리의 전제 사항이 아니다. 나아가 시행령 제4항에서 접근 신고를 수리 받은 후에 MAT를 체결한 경우에는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이에 대한 사실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MAT 체결을 접근 신고와는 별개로 취급하고 있으며, 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흔히 제공국들은 PIC 허가 발급 여부의 조건으로 MAT 내용을 검토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이익 공유를 담보하고자 한다. 그러나 접근의 전제 조건으로 반드시 MAT를 체결하도록 하는 것은 자국 유전자원등의 적극적인 이용에 대한 부당한 절차적 지연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접근이 이루어진 후에도 MAT 체결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나름 의미가 있다. 다만 이익 공유를 장려하고 나고야의정서의 조문에 부합하기 위하여, 접근 신고 수리 후 어느 시간 범위 내에 MAT를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의 조문을 추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2. MAT에 포함되어져야 할 내용에 대한 법규화

어떠한 방식을 취하든 MAT 체결을 의무화하는 명확한 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MAT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최소한의 내용을 법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⁵³⁾

52) 나고야의정서 제3조(g)항

53) 유전자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MAT는 사적 계약의 영역으로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되어, 계약 내용을 당사자 간 결정할 수 있으나, 체결된 내용이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해당하는지 등의 그 적절성 여부 판단에는 정부가 관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⁵⁴⁾ 그리고 유전자원법에서 규정하는 MAT는 우리나라가 제공국 입장에서 적용되는 것이기에, 해당 내용에 대해 굉장히 소극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다. 현재 유전자원법 시행규칙 상 접근 신고 서식이나 MAT 체결 확인 신청서 서식에는 기체결된 MAT의 개괄적인 내용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와 별개로 법조문 상에 필수 내용 기재 등을 나열하도록 하는 것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해당 내용으로는 나고야의정서 제6조 3(g)항에 열거된 것처럼 분쟁관련 조항,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이익 공유 조건, 제3자 양도 등에 대한 조건, 이용 목적 변경에 대한 조건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3. MAT 의무화 시 국제 통상법 내국민대우원칙 위반 여부

MAT 관련 규칙 및 절차 규정 도입에 가장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이 과연 국내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내국인에게도 똑같이 MAT 체결을 의무화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나고야의정서 대응 전략으로 많은 국내 이용자들에게 해외 유전자원이 아닌 국내 유전자원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와중에, 국내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는, 해외 유전자원 대체로 우리나라 유전자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MAT를 체결해야 하는가이다. 현재 유전자원법 제11조 조문에는 이익의 공유 합의 대상으로 ‘제공자’와 ‘이용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용자에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도 포함된다. 접근 신고 규정인 제9조에는 내 외국인 구별이 확실한 반면, 이익의 공유규정인 제11조에는 국적 구별 없이 모든 이용자는 이익의 공유 의무자가 된다. PIC요구 시 MAT 요구를 위한 규정 도입이 요구되기에 외국인에게만 접근 신고가 요구되는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에 대해서만 MAT 체결 요구가 가능하다는 논리가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외국인에게만 차별적으로 MAT를 요구하는 경우 국제 통상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깊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⁵⁴⁾ 박종원, 전게논문, 101면

국제 통상법적 분쟁의 해결수단으로는 강력한 분쟁해결절차를 가지고 있는 세계 무역기구(WTO)에의 제소, 양자투자협정(BIT) 또는 자유무역협정(FTA) 내의 투자자-국가소송(ISDS) 제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나고야의정서 및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국내 규제들이 상품교역에 적용될 수 있는 지, 따라서 WTO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 충돌 여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논쟁이 있어왔지만,⁵⁵⁾ 유전자원법 이익 공유 관련 규정자체가 국내 유전자원과 해외 유전자원, 즉 상품 간 또는 서비스 간 차별이 아니고, 내외국인과의 다른 취급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으므로 이는 WTO의 통상규율과의 충돌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유전자원에 접근하여 이를 이용하려는 것을 ‘투자’로 간주하는 경우에는 내외국인 간의 차별은 국제 투자규범 상 요구되는 내국민대우 원칙의 위반으로 ISDS의 제소대상이 될 수 있기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 미국의 제약회사가 한국의 유전자원에 접근하여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데, 한국 제약회사에는 요구되지 아니하는 이익 공유 의무를 미국의 제약회사에게만 요구한다면 이는 내국민대우 원칙의 위반이 될 수 있고, 이에 미국 제약회사는 한-미 FTA 내의 ISDS 제도를 이용하여 한국 정부를 제소할 수도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투자규범상 내국민대우 원칙은 ‘자국 영토 내에서 영업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에 대해 국내법과 제도 및 행정 관행에 따른 불리한 대우를 금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한-미 FTA 투자챕터에서의 내국민대우 원칙은 ‘자국 영역 내 투자의 설립·인수·확장·경영·영업·운영과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⁵⁶⁾ ‘투자’의 정의에 따라 투자규범이 적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달라질 수 있지만,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용 등은 회사의 경영·영업·운영에 해당될 여지가 크다. 그러나 내국민대우 원칙의 주요 조건인 ‘자국 영업 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르면 국내 유전자원을 대한민국에서 이용하는 외국 이용자에 대해서는 내국 이용자와 같은 취급을 하

55) 나고야의정서와 국제 통상법간의 접촉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결론이 나온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최원목,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를 위한 나고야의정서와 국제 통상법간의 충돌과 조화’, 「법학논집」, 제19권 2호, 2014

56) 한-미 FTA 제11.3조

여야 한다. 그런데 국내 유전자원을 해외 즉 외국 이용자의 자국 또는 제3국으로 이동시켜 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투자규범상의 내국민대우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할 것이다.

따라서 외국인에게만 이익 공유를 요구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투자규범상의 내국민대우 원칙과 저촉되지 아니하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법률 상 ‘해외에서 국내 유전자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외국인’이라는 단서를 붙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투자규범에서 내국민대우 원칙의 예외로 국내 공공질서 및 안보 유지, 환경 보호, 국제법에 따른 평화와 안보 관련 의무 준수 등을 위한 예외는 인정될 수 있으나, 이익 공유를 외국인에게만 요구하는 것은 열거된 사유에는 해당되기가 어려워 투자규범의 예외조항을 활용하기는 사실상 쉽지 아니하다.

4. MAT 전담기관

접근 관련 국가기관은 국가책임기관이듯이 그 연장선상에서 국가책임기관이 MAT 관계 기관이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MAT는 제공자와 이용자 간 체결되는 계약이니만큼 국가의 역할은 매우 제약적이고 최소한이겠지만, 내국 제공자가 MAT 체결을 함에 있어 질의 사항 등이 있는 경우, 상담 신청을 할 창구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다음에서 바로 후술하는 정부 지원 문제와도 연결되는 문제이다. MAT 상담 전담기관으로는 현재 국내외 정보 허브 및 이용자들의 상담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와의 연계가 매우 효율적일 것으로 여겨진다.

5. 인식제고 및 역량강화를 위한 정부지원 확대

마지막으로, MAT 체결 및 절차에 대한 규정을 도입함에 있어 무엇보다 제공자와 이용자들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전술하였듯이, 유전자원법 초안 제11조 2항에는 이익 공유에 대한 합의가 공정하고 공평하게 체결되도록 국가책임기관의 장이 이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이는 추후 삭제되었

다. 대신 이는 유전자원법 제6조에 정부가 ABS 달성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나고야의정서 인식제고는 해외 유전자원등을 이용하는 국내 이용자들에 초점을 맞추고 ABS 이해 제고와 해외 제공자와 체결하는 MAT 협상 전략, 의무준수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MAT 체결 요구는 우리나라가 제공국 입장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제공자가 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제공자로서의 협상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 및 해당 역량 강화에도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V. 結論

나고야의정서의 성공적인 국내 이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행법률의 명확한 ABS 규정 및 절차 도입이 필수조건이라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유전자원법인 경우, 외국인에 한하여 접근신고 의무를 명문화하고 있다. 반면 이익 공유와 관련하여서는 이에 대한 합의를 하도록 의무화가 되어 있지만, 이를 위한 MAT 체결이 의무 사항인지, 관련 절차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나고야의정서 제6조 3(g)항에서 PIC관련 절차를 도입한 당사국은 명확한 MAT관련 규정을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있기에 우리나라는 신속히 관련 규정 및 절차 마련을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유전자원법상 국내 유전자원 이용 시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MAT 관련 규정 도입에 따른 여러 고려사항들을 살펴보고 우리 정부의 이익 공유 대응 체계상의 관련 문제와 향후 과제를 연구하였다. 이를 위하여 나고야의정서와 유전자원법의 관련된 조문을 먼저 살펴보고, 해외의 동향들을 살펴보았다. 대표적인 주요 이용국이라고 볼 수 있는 유럽과 일본은 이용자들의 의무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관련 조항들을 마련했을 뿐, PIC과 MAT에 대한 의무 조항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다. 반면 인도와 같은 주요 제공국들은 PIC은 물론이고, 이익 공유를 위한 MAT 관련 조항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이익 공유 비율까지 입법화하고 있다. 요약컨대, ABS 조치 도입은 당사국의 재량이나 PIC을 요구하고 있는 당사국은 MAT 관련 명확한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접근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어, 명확한 MAT 관련 규정 및 절차를 도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조항에 대한 개정을 통해 나고야의정서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 첫째로, MAT 체결 도입 방식 및 체결 시기에 대한 명문화이다. 현재의 유전자원법에 따라 MAT 체결은 접근 신고를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며, 접근 신고 후에도 이를 얼마든지 체결할 수 있다. 다만 MAT 체결을 신속히 장려하기 위하여, 접근 신고 후 일정 시기 내에 체결하도록 하는 규정 도입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관련 규정에는 MAT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들을 열거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는 문구를 삽입하여 계약 자유의 원칙이 존중될 수 있는 배려가 필요하다. 셋째, 대한민국 국민에게 우리의 자원을 이용하도록 적극 권장하면서, 이에 대한 이익 공유를 의무화하는 경우, 내국인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기에 외국인에 한정하여 이익 공유 의무를 요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특히 내외국인 간의 차별은 국제 통상법적인 분쟁을 불러올 수 있어 이는 매우 조심하게 다뤄져야 할 부분이다.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용행위는 투자의 한 형태가 될 수 있기에, 국제 투자법의 내국민대우 원칙에 저촉이 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유전자원을 해외 또는 제3국으로 이동시켜 이를 이용하는 외국인’에게 이익 공유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해당 적용범위를 제한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MAT 관련 전담 상담창구 및 우리나라 국민이 제공자로서 효율적인 MAT 협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인식제고 및 역량강화 등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논문투고일 : 2018. 9. 29. 심사일 : 2018. 8. 28. 게재확정일 : 2018. 8. 29.

참고문헌

- 김윤정, ‘나고야의정서 이행에 있어 금전적 이익공유에 대한 고찰- 브라질, 인도의 입법적 조치를 중심으로,’ 「국제경제법연구」, 제16권 3호, 2016.
- 박종원, ‘나고야의정서 국내이행을 위한 한국의 입법추진동향과 과제,’ 「환경법연구」 제37권 제1호, 2015.
- 이상준, ‘나고야의정서 국내이행을 위한 국내 유전자원 접근 신고에 대한 소고,’ 「환경법연구」 제38권 제3호, 2016.
- 최원목,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를 위한 나고야의정서와 국제 통상법간의 충돌과 조화,’ 「법학논집」, 제19권 2호, 2014.
- 허인·전정화, ‘나고야의정서 상의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대한 EU의 이행 현황,’ 「환경법연구」, 제39권 1호, 2017.
-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839호
-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정(안), 환경부공고 제2016-439호
- 인도 유전자원등의 접근 및 이익 공유 지침(Guidelines on Access to Biological Resources and Associated Knowledge and Benefits Sharing Regulations)
- 일본 유전자원의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지침(Guidelines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 Brendan Coolsaet, et. al., “Implementing the Nagoya Protocol: Comparing Access and Benefit Sharing Regime in Europe,” Brill Nijhoff, 2015.
- Bundestags-Drucksache 17/14245, 27.06.2013.
- The 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ABS)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Oct. 29, 2010.
- REGULATION (EU) No 511/201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6 April 2014 on compliance measures for users from the 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in the Union.

[Abstract]**Establishing Clear Rules and Procedures for Requiring Mutually Agreed Terms in Korea**

Sun Young Oh

(Associate Professor at Soongsil University)

In order to implement the Nagoya Protocol successfully at the national level, clear rules for access and benefit-sharing (ABS) should be included in its implementation Act. As a user-friendly country, Korea requires very simple ABS rules by requiring notification procedures in cases of foreigners' access, and by demanding agreed benefit-sharing. According to Article 6 paragraph 3(g), Parties requiring Prior Informed Consent should establish the clear rules and procedures for requiring Mutually Agreed Terms (MATs), and Korea has an obligation to do so. Korea, however, does not have any relevant regulations for MAT in its implementation Act, but rather, it only simply requires provider and user to agree their benefit-sharing. This paper, therefore, identifies what factors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based on the ideas of protecting our genetic resources located in Korea. As a provider country, clear benefit-sharing and MATs rules are necessary as well as an access rule. Here are some suggestions and ideas to amend our current benefit-sharing rules: First, Korea should clarify the time period for signing MATs. Having the MAT is not a mandatory requisite, but Korea should limit the time period if the MAT is going to be made after access is allowed. Second, the implementation Act should mention that the MAT must be set out in writing and enumerate some terms that may be included in the MATs. Third, which is very important and carefully discussed, Korea should closely examine whether benefit-sharing is required only for foreigners or both foreigners and Koreans. If Korea decides the former option, the provision should be carefully made not to cause international trade disputes due to violation of national treatment. Lastly, there should be national authority for advising Korean providers, and the Korean government's active support for raising public awareness and capacity building.

주 제 어 나고야의정서, 접근, 이익 공유, 상호합의조건, 유전자원법, 제공국

Key Words Nagoya Protocol, Access, Benefit-Sharing, Mutually Agreed Terms, Korean Implementing Law for Nagoya Protocol, Provider Country